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428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김진성, 안주현, 구나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민관식

변 론 종 결 2021. 6. 16.

판 결 선 고 2021. 10. 13.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505166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및 주식회사 D 이 2016. 10. 25. 피고에게 한 액면금 1,186,25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 발행일 2016. 10. 25.,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4행 문장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피고는 D 외에도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회사 및 그 대표자들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것이 피고의 정상적인 여신업무의 일환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피고의 대리인인 W(E 대표자)과 C 및 D 사이에 이뤄진 것이므로, 피고의 약의 유무는 대리인인 W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W은 K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음이 명백하다. 특히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의 대리인인 W이 D 및 C와 통모하여 발행하였거나, K 사기 사건의 정범인 G와 W 및 그 방조범인 C이 통모하여 발행한 것인데, 피고를 대리한 W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D 및 C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1) 2) 이 사건 약속어음은 액면금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 상태로 발행되었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K 사기 사건이 드러난 이후인 2016. 12. 26. 액면금을 기재하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함께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이에 대한 피고의 악의는 피고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고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완성한 2016. 12. 26.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W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여 W이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W이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W에게 명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위임장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와 D 사이의 매매예약계약서 및 이 사건 약속어음에도 대리인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 다만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이므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직원 X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 W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을 근거로 묵시적인 수권행위가 있었다거나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X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X은 2017. 2. 22. K 사기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W과 육류담보대출(K) 실무와 관련해서 접촉을 했고, W의 요청으로 그가 대표자로 있는 E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이 이뤄졌다. 대출 신청 당시 차주인 E로부터 직접 매매예약계약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서류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W과 K 실무와 관련하여 접촉을 했다는 부분은 피고가 기존에 취급하지 않던 K 상품에 관하여 W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2) W이 매매예약계약서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한 것은 단순히 사실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X의 진술을 근거로 묵시적인 수권행위가

있었다거나 대리권 수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W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관하여 본다. W의 증언 취지는 위 X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요청으로 D 및 C으로부터 매매예약계약서 및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서류를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W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순한 사실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고가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W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피고가 방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W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또한 묵시적인 수권행위 내지 대리권 수여의 추단 근거가 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수익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는 ‘채무자인 C 및 D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한 2016. 10. 25.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인 2016. 10. 25.이 되고, 이와 달리 2016. 12. 26.이 기준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청구취지와 모순되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6. 12. 26.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였고 그 무렵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백지보충시점인 2016. 12. 26.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악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백지어음에 있어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1999 판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문현정, 판사 강지현

1) 한편 원고는 W이 피고의 K 대출과 관련하여 중개인으로서 활동하였으므로 W을 기준으로 악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중개인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그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이에 관한 X의 진술(을 제9호증 6면) 및 W의 당심 증언(W 녹취서 3면)은 다음과 같다.

X의 진술: ‘2016. 7.경 Y이란 사람이 찾아와 K 상품을 취급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취급하지 않던 상품이라 2달 정도 검토를 했고 2016. 9.부터 상품을 취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Y이 W을 저희 회사에 소개시켜 주었고, W이 K 실무와 관련해서 저희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K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K을 저희가 취급하면 자기가 운영하는 E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W의 증언: ‘X에게 K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수입고기가 수입되서 냉동창고에 보관해서 대출되는 과정까지 설명을 한 번 해주었습니다.’